

인간, 초효율, 윤리, 감동경영

2014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- 한국가스공사 -

2014. 7.

“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”
한국장학재단

I 선발내용

1. 추진배경

- 한국가스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처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개요

- 선발자격 : **선발지역* 소재지 대학**에 재학 중이면서 **선발요건****에 해당되는 학생

* 선발지역

순번	선발지역	선발인원
1	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	11
2	인천광역시	11
3	광주광역시	9
4	경기 성남시, 용인시	8
5	경기 평택시, 화성시	8
6	경기 수원시, 안산시, 시흥시	6
7	부산광역시, 경남 김해시	8
8	경남 통영시, 창원시, 거제시	8
9	강원 원주시, 춘천시, 정선군	8
10	강원 삼척시, 강릉시, 동해시	8
11	서울특별시	6
12	대전광역시, 충남 서천군	6
13	전북 군산시, 전주시, 익산시	6
14	제주도 제주시	4
계	-	107

** 6가지 선발요건

- 학생가장¹⁾(아동복지시설 출신자 포함) ■ 장애인 가정 자녀 또는 본인
- 산재근로자(1-7급)가정 자녀 또는 본인 ■ 한부모 가정 자녀²⁾
-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또는 본인 ■ 다문화 가정 자녀³⁾

¹⁾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, 기혼자 제외

²⁾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, 기혼자 제외

³⁾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

선발인원 : 107명 내외

지원내용 : 200만원 지원(등록금 범위 내 지원)

※ 사랑드림장학금 수혜가능금액이 최소 190만원 이상이 되어야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하며,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
※ 등록금액이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, 등록금액만큼 지원

지원기간 : 1개 학기

심사기준 : 가계소득수준(50점) + 성적(50점)

3. 신청자격

대상학생 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
대상대학 :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

※ 단, 전공대학, 임시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, 각종대학은 제외

성적기준

○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

○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
II 심사기준

1. 심사단계

단계	항목	배점
1단계	○ 자격요건 확인	-
2단계	○ 가계소득수준 평가 : 소득분위 확인	50
	○ 성적평가 :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	50
총점		100

2. 배점기준

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(50점)

소득 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50	45	40	35	30	25	20	15	10

성적 배점기준(50점)

•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 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성적 비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50	47.5	45	42.5	40	37.5	35	32.5	30	27.5
성적 비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 -
점수	25	22.5	20	17.5	15	12.5	10	7.5	5	2.5

III 장학생 선발 및 관리기준

1. 장학생 선발

- 동점자 처리기준
 - 장학금 심사 중 **동점자가 발생**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
 - 기준1. **소득분위가 낮은** 자를 우선으로 함
 - 기준2. **성적이 높은** 자를 우선으로 함
 - 기준3. **연소자**를 우선으로 함
- 대학(원)별 선발인원
 - 대학(원)별 형평성을 위하여 **1개 대학**의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**20%를 초과할 수 없음**
 - ※ 선발가능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, 결사를 원칙으로 함
- 등록금 범위 내 지원
 -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로 인해 사랑드림장학금이 정액 지원될 수 없는 경우, 선발대상에서 제외
 - 단, 중복수혜금액이 **10만원 미만**인 경우에는 선발
 - 사랑드림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등록금만큼 지원
- 차순위자 선발
 -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,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**차순위자 순**으로 선발할 수 있음
 - 장학금 반환으로 인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**차순위자 순**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음

6

2. 이종지원방지

- 등록금 범위를 **초과**하여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**수혜 불가**

구분	종류 및 내용
이종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	-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	-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	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
	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 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
	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	
학자금 대출	- 든든학자금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
	-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
	- 타기관 학자금 융자
	-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, 국가보훈처, 국방부 등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, 장기복무계대군인 학자금 대부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,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

7

구분	종류 및 내용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장학재단 장학금(국가장학금 I, 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,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인문사회계)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) 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)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- 'BK21', 'NURI'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기타학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
예외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수당(저소득층 위주) 또는 근로장학금,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, 또는 교육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(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) -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3. 장학생 관리기준

□ 장학금 반환

- 학적변동 등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탈락 사유 발생 시 **반환기준에 따라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**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않음

□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탈락

-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**대학 장학담당부서**에 통보
-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, **장학금 환수** 및 **장학생 자격상실**

-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**허위로 판명**된 경우
⇒ **장학생 자격상실** 및 **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**
 - ② 직전학기의 **성적**과 **이수학점**이 기부차별 기준에 **미충족**될 경우
⇒ **장학금 지원중단** 및 **장학생 자격상실**
 - ③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**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**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
⇒ **해당학기 장학금 반환** 및 **장학생 자격 상실**
- ※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

IV 기타사항

1. 서류제출

가족관계증명서

- 주민센터 및 민원24(<http://www.minwon.go.kr>)에서 발급가능

미혼	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기혼	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
- 제출방법 : 장학금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
 - 장학금 신청완료 후 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화면에서 제출
 - ※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af.go.kr>) → 사이버창구 → 서류제출
 - 서류는 PDF, ZIP, JPG, HWP 형태로 업로드
 - ※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,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

2. 장학생 선발일정

내용	일정
장학금 신청	2014. 7. 21(월) ~ 8.1(금)
장학생 선발결과 발표	2014. 8. 29(금) 예정

3. 문의처

- 주소 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-11 연세세브란스빌딩 한국장학재단 24층, 우수/취업장학지원부 '사랑드림장학사업' 담당자 앞
- 전화 : 1599-2290

※ 상기 내용과 일정은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